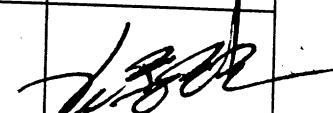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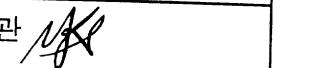


# 국무조정실

우 110-760 서울시 종로구 세종로 77 / 전화 (02) 734-9345 / 전송 (02) 720-1162

문서번호	국무규제 05090 -	취 급		국무조정실장	국 무 총 리
시행일자	1998. 5. (년)	보 존			
받 음 받는 곳 참조		조정관	3/5/6	3/5/6	
참 조 규제개혁담당관		심의관	5	기획심의관	
제 목	『'98년 규제개혁 종합지침』 시달(국무총리지시 제1998 - 8 호)	과 장	11		협 조
		기 안	정 진 일		

행정규제기본법의 시행에 따라 '98년도에 중앙행정기관이 추진해야 할 규제개혁업무 전반에 관한 『'98년 규제개혁 종합지침』을 불임과 같이 통보하면서 다음 사항을 지시하니 각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규제의 정비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1. 규제개혁의 기본목표

- 국가경쟁력 강화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는 전면적으로 개혁하며, 규제의 신설은 강력 억제함
  - 현존하는 규제의 존폐여부를 제로베이스에서 전면 재검토하여
  - 경쟁을 제한하거나 국제규범에 미흡한 경제활동관련 규제는 원칙적으로 폐지하고
  - 환경, 안전, 보건 등 국민전체의 공익과 관련하여 존속이 불가피한 규제는 규제의 질을 대폭 향상함
- 기업활동 자유화수준 및 국가경쟁력 평가를 세계 10위권대 수준으로 향상시킴

## 2. 규제개혁의 추진전략

- 모든 규제의 등록을 의무화하고, 규제신설시 기존규제를 감축하는 등 부처별 규제총량제를 실시함

- 모든 규제를 원점(Zero Base)에서 재검토하며, 매년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선정한 중점추진 규제분야를 집중적·체계적으로 정비추진함
- 각 부처는 금년 6월말까지 소관 모든 규제에 대하여 폐지 또는 개선계획을 수립하고 연차별 감축목표량을 설정·정비함
- 법령 미근거 규제는 즉시 정비하고, 계속 존치가 필요한 사항은 금년말까지 법령에 그 근거를 마련토록 하여 1999년부터는 법령에 근거없는 모든 규제는 효력을 상실함
- 신설·강화되는 규제에 대해서는 규제영향분석을 실시하여 정밀심사하며, 법제처 법령심사전에 규제개혁위원회의 사전심사를 의무화함
- 규제의 신설·강화시 5년이내의 존속기한 설정을 의무화하는『규제일몰제』를 실시하는 한편, 기존규제에 대해서도 규제일몰제의 취지를 반영하여 규제의 존속필요성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함
- 사전·통제적 규제에서 사후·관리적 규제체제로 전환해 나가고, 규제의 기준과 절차를 투명화·객관화하여 국민편의 위주로 규제행정을 개선해 나감

### 3. '98년 규제정비계획 수립

- 금년도는 우리경제의 회생과 경쟁력 강화에 시급한 외국인투자 활성화를 위한 분야, 기업활동 관련 핵심덩어리 규제개혁분야, 금융·유통·수출입관련 분야, 국민생활불편 해소분야를 중점추진 규제개혁분야로 선정하여 우선적으로 규제개혁을 추진하며, 소관 부처에서는 해당분야 규제에 대한 정밀검토와 관계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정비계획을 수립·추진함
- 규제개혁위원회는 중점추진분야 규제정비계획과 각 부처의 연차별 정비 계획을 종합·심의하여『규제정비 종합계획』을 수립·공표함
- 각 중앙행정기관은 규제개혁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기획관리실장(기획관리관)이 주관하여 관련 실·국과 연구기관·전문가 등이 참여하는『규제개혁추진단』을 구성·운영함

### 4. 기존규제의 자체정비 추진

- 각 중앙행정기관은 소관 모든 기존규제를 대상으로 폐지 또는 개선계획 및 연차별 감축목표량을 설정하는 연차별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자체정비를 추진하며, 이해관계인·전문가 등의 의견수렴과 현장조사 등 다각적인 규제발굴을 통해 수립하고 부처별 규제개혁추진단이 주축이 되어 체계적으로 검토·시행함

- 우선정비대상 규제는 행정 및 사회환경에 비추어 존속시킬 필요성이 없어진 규제, 법 시행일전 5년간 개정되지 아니한 규제, 다른 규제와 중복 또는 경합되는 규제, 시행과정에서 효율성이 저하된 규제, 기타 정비의 시급성이 인정되는 규제 등을 대상으로 함

## 5. 법령미근거 행정규제 정비

※ 국무총리지시 제1998-5호('98. 4. 14)로 기시달

## 6. 규제의 등록 · 공표

- 각 중앙행정기관은 소관 모든 기존규제에 대하여 '98.8.31까지 규제개혁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하며,
- 신설규제 또는 변경 · 폐지된 규제는 당해 규제에 관한 법령 등이 공표 · 발령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등록함

## 7. 규제의 신설 · 강화에 대한 심사

- '98.6.1부터 규제를 신설 · 강화하는 경우 규제의 필요성, 규제목적의 실현 가능성, 규제의 비용과 편익의 비교분석 등을 종합 고려하여 규제영향분석을 실시하고 자체심사와 이해관계인 등의 의견 수렴을 거쳐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사를 요청함
- 규제를 계속 존속시켜야 할 명백한 사유가 없는 경우 최소한의 기한내에서 존속기한을 설정하여 법령 등에 명시함(원칙적으로 5년 이내)

## 8. 기타

- 각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불임 종합지침에 의한 정비계획 및 실적을 각각 정해진 기한내에 국무조정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행정자치부장관과 교육부장관은 행정규제기본법과 동 지침에 의거하여 지방자치단체의 규제 개혁에 필요한 제반조치를 강구하여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불임 『'98년 규제개혁 종합지침』 1부. 끝.

국 무 종 리

받는 곳 가(13~20, 31~55, 57~67)

# 국무조정실

우 110-760 서울시 종로구 세종로 77 / 전화 (02) 734-9345 / 전송 (02) 720-1162

문서번호 국무규제 05090 - 87

시행일자 1998. 5. 7. (년)

받음

참조 규제개혁담당관

제목 『'98년 규제개혁 종합지침』 시달(국무총리지시 제 1998 - Ⓛ 호)

선결			지	
접수	일자 시간		시 결재	
	번호		· 공	
	처리과		람	
	담당자			

행정규제기본법의 시행에 따라 '98년도에 중앙행정기관이 추진해야 할 규제개혁업무 전반에 관한 『'98년 규제개혁 종합지침』을 불임과 같이 통보하면서 다음 사항을 지시하니 각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규제의 정비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 다음 -

### 1. 규제개혁의 기본목표

- 국가경쟁력 강화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는 전면적으로 개혁하며, 규제의 신설은 강력 억제함
  - 현존하는 규제의 존폐여부를 제로베이스에서 전면 재검토하여
  - 경쟁을 제한하거나 국제규범에 미흡한 경제활동관련 규제는 원칙적으로 폐지하고
  - 환경, 안전, 보건 등 국민전체의 공익과 관련하여 존속이 불가피한 규제는 규제의 질을 대폭 향상함
- 기업활동 자유화수준 및 국가경쟁력 평가를 세계 10위권대 수준으로 향상시킴

### 2. 규제개혁의 추진전략

- 모든 규제의 등록을 의무화하고, 규제신설시 기존규제를 감축하는 등 부처별 규제총량제를 실시함

- 모든 규제를 원점(Zero Base)에서 재검토하며, 매년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선정한 중점추진 규제분야를 집중적·체계적으로 정비추진함
- 각 부처는 금년 6월말까지 소관 모든 규제에 대하여 폐지 또는 개선계획을 수립하고 연차별 감축목표량을 설정·정비함
- 법령 미근거 규제는 즉시 정비하고, 계속 존치가 필요한 사항은 금년말까지 법령에 그 근거를 마련토록 하여 1999년부터는 법령에 근거없는 모든 규제는 효력을 상실함
- 신설·강화되는 규제에 대해서는 규제영향분석을 실시하여 정밀심사하며, 법제처 법령심사전에 규제개혁위원회의 사전심사를 의무화함
- 규제의 신설·강화시 5년이내의 존속기한 설정을 의무화하는 「규제일몰제」를 실시하는 한편, 기존규제에 대해서도 규제일몰제의 취지를 반영하여 규제의 존속필요성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함
- 사전·통제적 규제에서 사후·관리적 규제체제로 전환해 나가고, 규제의 기준과 절차를 투명화·객관화하여 국민편의 위주로 규제행정을 개선해 나감

### 3. '98년 규제정비계획 수립

- 금년도는 우리경제의 회생과 경쟁력 강화에 시급한 외국인투자 활성화를 위한 분야, 기업활동 관련 핵심덩어리 규제개혁분야, 금융·유통·수출입관련 분야, 국민생활불편 해소분야를 중점추진 규제개혁분야로 선정하여 우선적으로 규제개혁을 추진하며, 소관 부처에서는 해당분야 규제에 대한 정밀검토와 관계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정비계획을 수립·추진함
- 규제개혁위원회는 중점추진분야 규제정비계획과 각 부처의 연차별 정비 계획을 종합·심의하여 「규제정비 종합계획」을 수립·공표함
- 각 중앙행정기관은 규제개혁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기획관리실장(기획관리관)이 주관하여 관련 실·국과 연구기관·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규제개혁추진단」을 구성·운영함

### 4. 기존규제의 자체정비 추진

- 각 중앙행정기관은 소관 모든 기존규제를 대상으로 폐지 또는 개선계획 및 연차별 감축목표량을 설정하는 연차별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자체정비를 추진하며, 이해관계인·전문가 등의 의견수렴과 현장조사 등 다각적인 규제발굴을 통해 수립하고 부처별 규제개혁추진단이 주축이 되어 체계적으로 검토·시행함

- 우선정비대상 규제는 행정 및 사회환경에 비추어 존속시킬 필요성이 없어진 규제, 법 시행일전 5년간 개정되지 아니한 규제, 다른 규제와 중복 또는 경합되는 규제, 시행과정에서 효율성이 저하된 규제, 기타 정비의 시급성이 인정되는 규제 등을 대상으로 함

## 5. 법령미근거 행정규제 정비

※ 국무총리지시 제1998-5호('98. 4. 14)로 기시달

## 6. 규제의 등록 · 공표

- 각 중앙행정기관은 소관 모든 기존규제에 대하여 '98.8.31까지 규제개혁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하며,
- 신설규제 또는 변경 · 폐지된 규제는 당해 규제에 관한 법령 등이 공표 · 발령 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등록함

## 7. 규제의 신설 · 강화에 대한 심사

- '98.6.1부터 규제를 신설 · 강화하는 경우 규제의 필요성, 규제목적의 실현 가능성, 규제의 비용과 편익의 비교분석 등을 종합 고려하여 규제영향분석을 실시하고 자체심사와 이해관계인 등의 의견 수렴을 거쳐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사를 요청함
- 규제를 계속 존속시켜야 할 명백한 사유가 없는 경우 최소한의 기한내에서 존속기한을 설정하여 법령 등에 명시함(원칙적으로 5년 이내)

## 8. 기타

- 각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불임 종합지침에 의한 정비계획 및 실적을 각각 정해진 기한내에 국무조정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행정자치부장관과 교육부장관은 행정규제기본법과 동 지침에 의거하여 지방자치단체의 규제 개혁에 필요한 제반조치를 강구하여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98년 규제개혁 종합지침」 1부. 끝.

국 무 종



발는 곳 가(13~20, 31~55, 57~67)